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정 2018. 3. 28. 규칙 제2524호

개정 2021. 12. 13. 규칙 제2784호

개정 2024. 10. 30. 규칙 제298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산대학교 학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다.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그밖에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1.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휴학 중인 자도 포함한다. 또한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①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인권상담실, 성평등상담실, 운영위원회, 조사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인권상담실과 성평등상담실에는 각 상담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상담관을 두어야 하며, 전문상담관은 각 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의 조사를 주관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 및 연구조교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에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인권상담실 기능) 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성평등상담실과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행위 이외의 인권침해 및 고충 관련 상담과 조사
2.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
3. 인권침해행위, 제도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결과 공개
4. 그 밖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성평등상담실의 기능) 성평등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인권상담실과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상담과 조사
2.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조치 등 필요한 지원
3. 상호존중의 평등한 성문화를 지향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4.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결과 공개
5.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생과 직원을 포함하여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한 학내외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

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상담실, 성평등상담실 운영 및 평가
3. 인권침해 등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중요사항
4. 조사심의위원회 구성
5. 예산과 결산
6. 센터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
7.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본교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조사심의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당사자와 친족관계나 지도교수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공정한 조사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은 위원직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조사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등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 접수 후 구성되며,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해산한다.

⑦ 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과 심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조사심의위원회의 기능) 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침해 등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등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여부의 결정·조정 및 중재·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등과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4. 기타 본교 구성원간의 갈등·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12조(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조사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센터장, 전문상담관, 센터직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3조(자문위원회)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자문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4조(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이하 ‘서면 등’ 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센터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⑤ 센터는 조사심의가 종료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다만, 사건당사자가 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새로운 근거 또는 부당성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으면,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한다.

1.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

한 경우

2. 제14조제3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고가 제기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하게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결정 전이라도 피해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 또는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학내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4.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 조사심의위원회의 업무 개시 시점은 신고가 접수된 후 위원회가 구성된 최초의 시간으로 하고, 조사가 종결되면 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등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조사완료 후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신고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0조(당사자간 화해) ① 양 당사자는 사건에 관하여 화해하거나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여 센터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 화해의 성립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는 동일한 사건을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21조(조정 및 중재)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 및 중재를 위한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구제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22조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은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한다.

제23조(징계의 요청 등)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사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제16조 또는 제22조제1항에 의한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5. 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센터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다만 동반대리인은 조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5조(피해자의 보호)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및 그 밖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26조(비밀유지) 센터의 사건 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위원 또는 관계자는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28조(수당 등 경비)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칙과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1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

력하여야 한다.

부칙(규칙 제2524호, 2018.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 되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규칙 제2784호, 2021. 12.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986호, 2024. 10.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